

2023년 인터넷(스마트폰)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 안내

I 교육개요

- 교육기간 : 2023. 3. 8. ~ 12. 31.
- 교육대상 : 도내 유·아동, 청소년, 성인
- 주요내용 : 인터넷(스마트폰) 과의존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
- 교육주관 :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전남스마트쉽센터)
- 교육비 : 무료
- 신청방법 : 본인(가족), 교사 등이 스마트쉽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
www.iapc.or.kr / 1599-0075, 061-642-1971~3

II 교육과정

1 인터넷(스마트폰) 레몬교실

- 교육진행 : 신청한 학교(기관)에 방문하여 1시간 단체강의
- 교육대상 : 유아동, 청소년, 성인 등 기관(회당 80명 내외)
- 교육내용
 - (유아) 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구연 동화 등
 - (청소년) 스마트폰 바른 사용 인식 제고 및 자기 점검 등
 - (성인) 중독 위험 인식 제고 및 자녀 사용지도 방법 등

레몬교실이란?

- '레몬'이 주는 일반적인 이미지(상큼함, 신선함, 건강함 등)를 사용하여 과의존 현상에서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하자는 의미

2 WOW 건강한 멘토링

- 교육진행 : 2시간 학급단위 강의 진행
- 교육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청소년(회당 30명)
- 교육내용 : 자기점검 방법 습득 등 레몬교실의 심화과정

WOW 건강한 멘토링이란 ?

- 교육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놀라움과 감탄을 나타내는 감탄사 'WOW'를 활용함
- '멘토링'을 사용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교육 대상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실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심화 프로그램

③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

- 상담진행 : 1인당 8회 상담(2회 전화상담, 6회 방문상담)
- 상담대상 : 과의존 위험군 대상 가정방문 상담
- 신청방법 : 본인 또는 가족, 교사 등이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신청

【의무교육 근거】

-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 제54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)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: 연 1회 이상
 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: 연 1회 이상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: 반기별 1회 이상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: 연 1회 이상
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: 연 1회 이상

※ 코로나19 확산시

- 집합교육은 녹화영상, 학교방송실, 원격교육 등을 활용하고, 가정방문상담은 영상대화, 전화상담 등으로 전환하여 비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.